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76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0년 3월 4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출연금은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용어 사용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점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서 ‘출연금’을 ‘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’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,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서 기금의 수입과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9개 과목으로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골자

- 안 제3조제1항제1호 “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”을 “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”으로 수정함.
- 안 제3조제2항,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“기금전출금”을 각각 “전입금”으로 수정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제1호 “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”을 “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”으로 하고,

안 제3조제2항,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“기금전출금”을 각각 “전입금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기금”을 “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이라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기금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출연금”을 “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“다만,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% 이상을 포함한다.”를 “시장은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출연금”을 “전입금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출연금”을 “전입금”으로 “제4조제5호”를 “제4조제6호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“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,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 담당 실·본부·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체육정책과장으로 하며,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”를 “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하여
“1. 기금운용관: 체육업무 담당 실·본부·국장
2. 기금분임운용관: 체육정책과장
3. 기금출납원: 기금 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2항을 신설하여
“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비치하고”를 “갖추어 두고”로, “증빙서류”를 “증명서류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」”로, “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신·구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금의 존속기한) <u>기금</u>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존속기한) <u>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<u>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</u>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<u>출연금</u>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② <u>다만,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의 60% 이상을 포함한다.</u>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<u>기금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로부터</u> <u>의 전입금</u>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의 6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8조(기금의 관리·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,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돛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<u>출연금</u>의 범위 안에서 지</p>	<p>제8조(기금의 관리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입금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출한다. 다만,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돛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<u>출연금</u> 중 50%는 <u>제4조제5호</u>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.</p> <p>제10조(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) ① <u>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,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 담당 실·본부·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체육정책과장으로 하며,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u>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<u>전입금</u> -----</p> <p><u>제4조제6호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10조(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) ① <u>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</u></p> <p>1. <u>기금운용관: 체육업무 담당 실·본부·국장</u></p> <p>2. <u>기금분임운용관: 체육정책과장</u></p> <p>3. <u>기금출납원: 기금 담당 사무관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<u>비치하고</u>, 기금에 관한 <u>증빙서류</u>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<u>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</u>」의 규정을 따르고,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「<u>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</u>」의 규정을 따른다.</p>	<p><u>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갖추어 두고</u> ----- -- <u>증명서류</u> ----- -----.</p> <p>제11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----- 「<u>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</u>」 ----- ----- 「<u>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</u>」 ----- -----.</p>